

2022년도
매곡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2022년도 매곡면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2. 4. 11. ~ 4. 14.(4일간) / 2019. 2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7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7건 (주의 11건, 시정 6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 75,88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 없음

《 수범사례 》

■ 면내 기업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 면사무소 게시판 내 채용공고, 이력서 접수 등 면내 기업과 협력하여 매곡면민 우선채용과 매곡면 취업률 향상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 붙임 1. 주요 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7부. 끝.

매곡면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7건	주의 11 시정 6		2건 75,880원
1	◦ 당직근무 출퇴근시간 미준수	주의		
2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시정		
3	◦ 각종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지 소홀	주의		
4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시정		
5	◦ 전기요금납부 소홀	시정		회수 1,880원
6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시정		
7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주의		
8	◦ 지출(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9	◦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입조치 지연 및 징수결의 업무 소홀	주의		
10	◦ 시설공사 등 하자검사 추진 소홀	주의		
11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부적정	주의		
12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구 주민등록증 미회수	주의		
13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 소홀	주의		
14	◦ 이륜자동차(변경)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15	◦ 이륜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납부확인 소홀	주의		
16	◦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시정		
17	◦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검토 및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74,0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현 황】

○ 당직근무 시 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지연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1	2019.04.21.(일)	09:09:42	18:06:33	***급	A	
2	2019.10.09.(수)	09:02:36	18:47:09	***급	A	
3	2020.03.28.(토)	09:02:11	22:17:54	***급	B	
4	2020.08.01.(토)	08:46:27	17:59:42	***급	C	
5	2020.09.13.(일)	08:52:27	17:59:00	***급	D	
6	2020.12.26.(토)	08:55:48	17:57:20	***급	C	
7	2021.01.09.(토)	09:00:28	18:00:26	***급	E	
8	2021.02.06.(토)	09:00:50	19:02:47	***급	F	
9	2021.07.10.(토)	08:47:42	17:59:39	***급	G	
10	2021.08.21.(토)	09:01:10	18:09:10	***급	H	
11	2021.09.26.(일)	08:44:07	17:59:40	***급	G	
12	2021.10.09.(토)	09:02:08	18:06:41	***급	F	
13	2021.11.20.(토)	09:01:04	18:04:08	***급	H	
14	2021.12.26.(일)	09:00:53	18:06:20	***급	H	

※ 매곡면 제출자료(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전산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 의하면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함.

※ 제19조에 따라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급 A의 7명은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 등을 하면서 출근 시 9회 지각으로 인하여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5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작동 하는 등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급	I	***급	J	2021.07.01.	부	주민복지팀
2	***급	J	***급	K	2021.10.06.	부	주민복지팀
3	***급	L	***급	J	2021.10.06.	부	산업팀
4	***급	M	***급	N	2021.03.08.	부	산업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부서장 결재 후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매곡면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4건의 인사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각종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지 소홀

【현 황】

○ 붙임 참조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따라서, 매곡면에서는 군청의 관련부서에서 시행된 각종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통지 공문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해당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 서류를 자세히 안내함과 더불어,
-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전에 교부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로 해당 보조사업을 착수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별첨하는 “2019~2022 각종 보조사업 교부결정 미통지 사업내역” 에서와 같이 군청의 해당업무 관련부서로부터 교부결정 통지 공문을 접수받았음에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2019~2022 각종 보조사업 교부결정 미통지 사업내역

연번	접수일	공 문 제 목	군 관련부서	비고
1	2019.03.12	2019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알림	농정과	
2	2019.03.13	2019년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3	2019.03.14	2019년 과수 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4	2019.03.15	2019년 포도비가림보완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5	2019.03.18	2019년 귀농인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교부결정 알림	농업기술센터	
6	2019.03.18	2019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업기술센터	
7	2019.03.18	2019년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업기술센터	
8	2019.03.18	2019년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업기술센터	
9	2019.03.26	2019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지역별관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10	2019.04.03	2019년 지역별관심사업(매곡 새마을회 비품구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행정과	
11	2019.04.29	2019년 시설원에 현대화사업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12	2019.04.30	2019년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행정과	
13	2019.06.03	2019년 TMR사료원료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알림	농정과	
14	2019.07.05	2019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군비)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15	2019.07.17	2019년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16	2019.09.16	2019년 과실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17	2020.03.20	2020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18	2020.03.30	202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국비)	농정과	
19	2020.05.04	2020년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0	2020.05.07	2020년 친환경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1	2020.05.14	2020년 추산환경개선제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연번	접수일	공 문 제 목	군 관련부서	비고
22	2020.05.15	2020년 곤충매개성질병 예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알림	농정과	
23	2020.05.19	농산물 유통시설(저온저장고)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4	2020.07.20	2020년 볏짚 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5	2020.10.08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6	2021.01.15	2021년 과수원에 시설재배농가 수정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사업추진 안내	농정과	
27	2021.02.26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8	2021.03.25	202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29	2021.04.13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30	2022.02.24	20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알림	농정과	
31	2022.03.03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32	2022.03.03	2022년 SI예방 계란난좌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알림	농정과	
33	2022.04.05	202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농정과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단위:천원)

건 명	지급일	지급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리(△△△) 농로정비공사	21.04.28.	14,928	320	330	-10	과소매입
□□리 농로정비공사	21.04.16.	10,531	240	230	1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는 ‘○○리(△△△) 농로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거나, 과소매입 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과소매입 된 건에 대해 추가매입 조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8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기요금 납부 소홀**

【현 황】

○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내역

(단위: 원)

연번	건명(고객번호)	지출일	납부금액	연체료	가산금	비고
합계			1,324,490	1,862	20	
1	노천△길 ○○○-○ (** **** **36)	21.03.29.	174,650	294		
2	민주지산로 ○○○○ (** **** **64)	21.03.29.	705,440	1,120	20	
3	노천△길 ○○○-○ (** **** **36)	21.10.29.	84,310	110		
4	민주지산로 ○○○○ (** **** **64)	21.10.29.	360,090	338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의 회계담당직원은 신규로 추가된 시설의 경우 개별고지납부를 지양하고 인터넷 빌링(Billing)을 신청하여 합산 청구토록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자동이체의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출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는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일까지 자동이체 공공요금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서 청구건에 대해서도 납기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매곡면에서는 전기요금 납부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해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총 4건의 고지 건에 대해서는 적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었고, 특히 연체료 및 가산금 1,882원을 예산지출 처리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예산지출 처리된 연체료 및 가산금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도	집행내역	지급일	지급액	계획수립 여부	비고
2022년	1월 직원생일 축하수당 지급	2022.01.14.	40,000원	부	
	3월 직원 생일수당 지급	2022.02.28.	120,000원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해야 하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
- 또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현황]과 같이 2022년 직원 생일 축하를 위한 영동사랑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2022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현 황】

○ 근무사항 내역

회계직명	직급/ 성명	근무사항내역		직무대리 지정여부	비고
		기간	사유		
재무관	***급 P	2021.5.24.~5.28.	장기재직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이 원인 행위 승인(18건, 44,999천원) - △△△ 재무관/지출원 경직
재무관	***급 P	2021.5.31.~6.01.	비상근무 특별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이 원인 행위 승인(5건, 6,737천원) - △△△ 재무관/지출원 경직
재무관	***급 P	2021.6.07.~6.11.	장기재직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이 원인 행위 승인(8건, 2,822천원) - △△△ 재무관/지출원 경직
재무관	***급 P	2021.6.17.~6.30.	장기재직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이 원인 행위 승인(26건, 16,966천원) - △△△ 재무관/지출원 경직
재무관	***급 Q	2021.11.26.	비상근무 특별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이 원인 행위 승인(2건, 1,121천원) - △△△ 재무관/지출원 경직
재무관	***급 Q	2021.12.16.	비상근무 특별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이 원인 행위 승인(3건, 7,192천원) - △△△ 재무관/지출원 경직
지출원	***급 R	2021.10.29.	휴가	부	- 직무대리 지정 없이 △△팀장이 지급승인(12건, 12,993천원)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의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현황]과 같이 총 7건에 대하여 재무관 또는 지출원 부재 시 문서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지정을 하지 않고 지출하였으며, 재무관과 지출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나 △△△이 e호조로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을 모두 승인하는 등 직무대리 지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지출(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내역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비고
사무관리비	21.04.30.	코로나 관련 체온측정기 구입	151,000	□□□	- 담당자 납품확인 누락	
시설비	21.07.15.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7차) 완료 보고 및 대금 지급	5,000,000	(주)□□□□	- 계약승낙서 및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에 기간 미기재	
시설비	21.11.01.	○○리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공사	2,800,000	□□□□□ □□(주)	- 승낙사항 미기재(기한, 지체 상금을 등) - 하자보증금지급확약서 내용 미기재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기간 미기재	
시설비	21.11.09.	긴급재난응급복구공사(6차)완료 보고 및 준공금 지급 외 다수	4,200,000	(주)□□□□	- 승낙사항 미기재(기한, 지체 상금을 등)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되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현황과 같이 담당자의 납품확인을 누락하거나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승낙사항,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 하자보증금지급확약서)에 계약 이행 기간, 지체상금율, 하자담보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출(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입조치 지연 및 징수결의 업무 소홀

【현 황】

○ 지연처리내역

연번	신고일	신고자	금액	수납일	지연일	비고
합계			1,277,000			
1	2021.07.01. ~ 2021.07.22.	○○○ 외15	170,000	2021-07-23	1일~21일	
2	2021.08.02. ~ 2021.08.31.	○○○ 외24	266,000	2021-09-02	1일~29일	
3	2021.09.24. ~ 2021.10.21.	○○○ 외23	433,000	2021-10-21	1일~27일	
4	2021.10.18. ~ 2021.12.27.	○○○ 외25	408,000	2021-12-31	1일~70일	

【위법부당사항】

1.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입조치 지연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6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수입금의 납입)에 따르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민원인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즉시 징수결의 절차를 거쳐 수납한 날의 다음 날에 금고에 납입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감사 대상기간 중 2021년도 7월~12월에만 총 91건, 총1,277,000원의 수입금 납입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0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징수결의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에는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보며,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매곡면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즉시 징수결의 절차를 거쳐 수납한 날의 다음 날에 금고에 납입해야 했으나,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징수결정 여부의 확인을 어렵게 하는 등 징수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등 하자검사 추진 소홀

【현 황】

○ 붙임 참조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담보책임의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검사)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매곡면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에 <○○리 마을옹벽설치공사> 등 9건, 2021년도 상반기에 <○○리 앞뜰 세천정비공사> 등 15건, 2021년도 하반기에 <○○소하천 하상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 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 하자검사 대상 내역

<2020년 하반기>

연번	공 사 명	도 급 자	도급액 (원)	준공일	하자보증기간		비 고
					시작일	종료일	
합계	9건						
1	○○리 마을옹벽 설치공사	□□건설	5,927,000	17.10.16.	17.10.16.	20.10.15.	
2	○○리 인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	8,918,000	17.12.07.	17.12.07.	20.12.06.	
3	○○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개발	9,338,000	17.12.14.	17.12.14.	20.12.13.	
4	○○리 ○○○ 농로정비	□□건설	10,080,000	17.12.22.	17.12.22.	20.12.21.	
5	○○리 농로 및 배수로 재정비	□□개발	14,751,000	18.10.02.	18.10.02.	20.10.01.	
6	○○리 농로 재정비	□□개발	8,980,790	18.12.10.	18.12.10.	20.12.09.	
7	○○리 ○○○ 농로정비	□□건설	10,080,000	17.12.22.	17.12.22.	20.12.21.	
8	○○리 농로 및 배수로 재정비	□□개발	14,751,000	18.10.02.	18.10.02.	20.10.01.	
9	○○리 농로 재정비	□□개발	8,980,790	18.12.10.	18.12.10.	20.12.09.	

<2021년 상반기>

연번	공 사 명	도 급 자	도급액 (원)	준공일	하자보증기간		비 고
					시작일	종료일	
합계	15건						
1	○○리 앞뜰 세천정비공사	□□건설	13,895,000	18.05.17.	18.05.17.	21.05.16.	
2	○○리 앞뜰 농로정비공사	□□건설	9,534,000	18.05.17.	18.05.17.	21.05.16.	
3	○○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개발	7,258,000	18.06.21.	18.06.21.	21.06.20.	
4	○○리 농로정비 및 마을창고 앞 옹벽설치	□□개발	14,200,000	18.06.22.	18.06.22.	21.06.21.	
5	○○소방대 앞 광장 재포장	□□□□건설	7,254,000	19.04.04.	19.04.04.	21.04.03.	
6	○○ 농로 및 배수로 정비	□□□□	9,284,400	19.04.24.	19.04.24.	21.04.24.	
7	○○하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개발	15,486,000	19.04.30.	19.04.30.	21.04.29.	
8	○○ 마을안길 재정비	□□□□건설	8,237,940	19.04.30.	19.04.30.	21.04.29.	
9	매곡면 경관가로등 정비사업	□□전기	16,920,000	19.05.20.	19.05.20.	21.05.19.	
10	○○리 농로포장	□□개발	6,868,050	19.05.29.	19.05.29.	21.05.28.	
11	○○리 앞뜰 세천정비공사	□□건설	13,895,000	18.05.17.	18.05.17.	21.05.16.	
12	○○ 세천 및 배수로 정비	□□건설	12,906,000	19.06.24.	19.06.24.	21.06.23.	
13	○○리 농로 포장공사	□□개발	6,448,400	19.06.24.	19.06.24.	21.06.23.	
14	○○ 마을안길 재정비	□□□□건설	8,237,940	19.04.30.	19.04.30.	21.04.29.	
15	○○하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개발	15,486,000	19.04.30.	19.04.30.	21.04.29.	

<2021년 하반기>

연번	공 사 명	도 급 자	도급액 (원)	준공일	하자보증기간		비 고
					시작일	종료일	
합계	6건						
1	○○소하천 하상정비	□□건설	10,764,000	19.07.22.	19.07.22.	21.07.21.	
2	○○리(○○) 배수로 설치공사	□□건설	9,000,000	19.11.15.	19.11.15.	21.11.14.	
3	○○리 ○○○ 노원조성사업	□□□□	9,000,000	19.12.02.	19.12.02.	21.12.01.	
4	○○○○리 다목적창고 광장 포장	□□건설	3,276,000	18.12.12.	18.12.12.	21.12.11.	
5	○○하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개발	5,743,000	18.12.17.	18.12.17.	21.12.16.	
6	○○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개발	9,202,000	18.12.17.	18.12.17.	21.12.16.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부적정

【현 황】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적정 징구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신고일자	발급일자	수수료(원)		비고
						실수납액	정상수납액	
1	○○○	****	성명(한자)변경	2021.02.10.	2021.02.10.	5,000	면제	
2	○○○	****	주소변경(한자)부족	2021.03.10.	2021.03.10.	5,000	면제	

2. 주민등록증 재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누락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신고일자	재발급일자	수수료(원)	비고
1	○○○	****	분실	2019.07.12.	2019.07.12.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2	○○○	****	분실	2019.08.05.	2019.08.05.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3	○○○	****	분실	2020.01.14.	2020.01.14.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4	○○○	****	분실	2020.02.05.	2020.02.05.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5	○○○	****	분실	2020.03.27.	2020.03.27.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

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①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분실, 훼손된 경우 ②성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및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⑥재외국민이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현황 1]과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외 1명에게 총 10,000원의 재발급 수수료를 징구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처리 시 대상 확인을 위한 사전 절차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누락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 필요한 확인 서류를 미징구 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구 주민등록증 미회수

【현 황】

○ 주민등록증 미회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신고일자	재발급일자	수수료(원)	비고
1	○○○	**.**.*	성명(한자)변경	2019.11.07.	2019.11.07.	면제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에 의한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은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현황]과 같이 성명(한자)변경으로 인해 재발급을 한 건에 대하여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 소홀

【현 황】

○ 쓰레기봉투 부적정 공급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연번	대상자		공급시작· 종료월	변동일자	변동내역	비고
	성명	주소				
1	○○○	민주지산로	19.4월	19.03.07.	전출	1월분 초과
2	○○○	노천△길	20.9월	20.11.04.	전출	2월분 부족
3	○○○	노천△길	20.10월	20.11.17.	자격중지	1월분 부족
4	○○○	노천△길	20.1월	20.02.10.	신규책정	1월분 초과
5	○○○	민주지산로	20.9월	20.12.26.	사망	3월분 부족
6	○○○	공수△길	21.10월	21.11.18.	사망	1월분 부족
7	○○○	공수△길	21.6월	21.09.30.	자격중지	3월분 부족
8	○○○	개춘△길	-	21.12.27.	신규책정	1월분 부족
9	○○○	옥전△길	-	21.12.27.	신규책정	1월분 부족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가구당 매월 120리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하로 쓰레기봉투를 무료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영동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60L의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사망 또는 전출, 자격중지 및 신규책정 등으로 자격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일이 포함된 해당 월 기

준으로 쓰레기봉투를 공급중지하거나 신규공급 하는 것이 타당 하나 [현황]과 같이 ○○○외 8명에 대해서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부족 또는 초과공급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변경)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붙임 참조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붙임] 현황에서와 같이 이륜자동차 신고시 구비서류(양도·양수증명서 작성 소홀, 첨부서류 누락 등)가 누락되어 있거나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접수시 이륜자동차 사용필증은 행정정보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재발행 신청서를 받거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이륜자동차신고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으며, 특히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하면서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발행을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연번	신고구분	신고일자	신고자	주소	차량번호	비고
1	사용	19.05.30.	○○○	△△△△	충북*****	양도·양수증명서 양도인 서명 누락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	폐지	19.05.30.	○○○	△△△△	충북*****	각서 징구, 사용필증 재발행
	사용	19.05.30.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	폐지	19.06.27.	○○○	△△△△	충북*****	사용필증 재발행
4	사용	19.06.05.	○○○	△△△△	충북*****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	폐지	19.06.05.	○○○	△△△△	충북*****	사용필증 재발행
6	폐지	19.05.22.	○○○	△△△△	충북*****	사용필증 재발행
7	변경	19.05.16.	○○○	△△△△	충북*****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미첨부 사용필증 재발행
8	사용	19.05.09.	○○○	△△△△	충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미첨부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9	사용	19.05.13.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0	폐지	19.05.01.	○○○	△△△△	충북*****	각서 징구, 사용필증 재발행
11	폐지	19.04.29.	○○○	△△△△	충북*****	사용필증 재발행
12	사용	19.04.08.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3	사용	19.03.04.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4	폐지	19.03.04.	○○○	△△△△	충북*****	각서 징구, 사용필증 재발행,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15	사용	19.02.25.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6	사용	19.07.2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17	변경	19.07.18.	○○○	△△△△	충북*****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미첨부 정부수입인지 첨부
18	변경	19.07.18.	○○○	△△△△	충북*****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미첨부 정부수입인지 첨부(상속)
19	사용	19.07.02.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	폐지	20.01.06	○○○	△△△△	충북*****	각서 징구
21	사용	20.03.0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22	변경	20.04.01.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3	폐지	20.04.14.	○○○	△△△△	충북*****	각서 징구
24	폐지	20.04.16.	○○○	△△△△	충북*****	각서 징구
25	사용	20.06.03.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6	사용	20.06.03.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7	사용	20.06.03.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8	사용	20.06.15.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9	사용	20.06.22.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0	사용	20.07.09.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1	사용	20.07.31.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2	사용	20.08.13.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3	사용	20.08.21.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4	변경	20.09.04.	○○○	△△△△	충북*****	시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 상속포기서 인감 미날인 위임장에 위임자, 수임자 기재 누락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35	사용	20.11.05.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36	사용	20.11.0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37	사용	20.11.0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38	사용	20.11.0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39	사용	20.11.0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0	사용	20.11.17.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1	사용	20.12.18.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매매계약서 양도양소인 날인 누락
42	사용	21.03.08.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3	사용	21.01.19.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4	사용	21.01.05.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5	사용	21.05.06.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6	사용	21.06.09.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47	사용	21.07.12.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48	사용	21.07.12.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49	사용	21.07.29.	○○○	△△△△	충북*****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서명 누락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50	사용	21.08.12.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1	사용	21.08.13.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2	변경	21.11.29.	○○○	△△△△	세종*****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3	사용	21.11.25.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4	사용	21.11.22.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55	사용	21.11.01.	○○○	△△△△	충북*****	정부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보험가입증명서 미첨부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납부확인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취득세 납부지연 내역

성명	주소	차량 번호	취득 및 등록일자	부과일자	원동기마력	납부내역		비 고
						납부일자	납부금액	
○○○	△△길	충북*** ****	21.11.25.	<u>21.11.26.</u>	4.9KW/630RPM (전기)	<u>22.02.04.</u>	81,560원 (가산금 2,370원)	

【위법부당사항】

-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 따라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 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세법」 제20조(신고납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신

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매곡면에서는 납세자가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였으며, 등록 후 취득세 부과를 하는 등 납부여부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함.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현 황】

○ 기간만료 광고물 현황

연번	업소명	광고물종류	표시시작일자	표시종료일자	안전도검사 대상여부	비고
1	□□□□□(주)□□	지주이용간판	2019.03.18.	2022.03.17.		높이미등록
2	□□□□□(주)□□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019.03.18.	2022.03.17.		
3	□□□□	지주이용간판	2014.01.20.	2020.01.19.	여	
4	□□□□	지주이용간판	2016.08.07.	2019.08.06.	여	
5	□□□□	지주이용간판	2016.07.07.	2019.08.06.		높이미등록
6	□□□□□□	지주이용간판	2012.12.01.	2015.11.30.	여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및 제9조(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 따른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은 “군수는 법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매곡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만료 광고물 6건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고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리고 연장허가 및 신고처리 되도록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으며, 이 중 3건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되어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옥외광고물의 규격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기간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74,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검토 및 사후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원가계산서 상 간접공사비			회수금액	비고
				비 목	예정가격 (설계금액)	정산금액		
계							74,000	제경비 포함
아름다운매곡 면가꾸기사업 (수목제거)	19,506	(주)□□건설 ○○○	2019.05.22. 2019.05.27. 2019.06.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210	302,600	△37,000	
△△리 배수로 정비사업	13,212	(주)□□건설 ○○○	2020.09.24. 2020.09.28. 2020.11.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574	238,583	△37,000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 시기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착공내역서)에 별도로(금액조정 없이)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매곡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아름다운 매곡면 가꾸기 사업(수목제거)> 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37,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리 배수로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도급자가 제출한 착공내역서상 원가계산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상·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아 준공 시 까지 잘못된 금액으로 정산처리하여 37,0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매곡면장은 과다지급된 공사비 74,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